

목차	기존	개정사항	페이지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라. 예방접종 실시 기준</p>	<p>3) 동시접종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 권고 - 접종할 대상자의 인적정보로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 시 코로나19 접종 일자 반드시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향후 변동 가능</p>	<p>3) 동시접종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과도 동시접종도 가능함. 단,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접종 시행 시 접종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하고 시스템에 접종부위를 선택하여 등록 예) 인플루엔자 - 삼각근(왼팔), 코로나19 - 삼각근(오른팔)</p>	8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사업 관리 체계 나. 기관별 역할</p>	<p>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p> <p>1) 질병관리청 ○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여부 및 운영 점검</p> <p>2) 시도 ○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관리 및 점검(현장 중심의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p> <p>3) 보건소 ○ 원활한 백신 공급(초기 배분 결정, 재분배,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구성원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및 지역의사회) 지역 내 의료기관 의견 수렴 </div>	<p>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p> <p>1) 질병관리청 ○ 삭제</p> <p>2) 시도 ○ 삭제</p> <p>3) 보건소 ○ 원활한 백신 공급(초기 배분 결정, 재분배,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권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구성원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및 지역의사회) 지역 내 의료기관 의견 수렴 및 백신 수급 논의 ※ 질병관리청 요청시 시·도는 보건소-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결과 제출 </div>	12-13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사업 관리 체계 나. 기관별 역할</p>	<p>4) 위탁의료기관 ○ 어르신 사업용 백신 관리(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적극 협조 등) ○ 임신부 및 어린이 사업용 백신의 적절한 수량 구매(과거 사업 대상 접종현황을 참고하여 과다한 구매를 지양) ○ 백신 관리 철저(부록4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참고)</p>	<p>4) 위탁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등 적극 협조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어린이·임신부 사업용 백신의 적절한 수량 구매(과거 사업 대상 접종현황을 참고하여 과다한 구매 지양) ○ 백신 관리 철저(부록4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p>	13-14

	<p>5) 백신 조달계약 업체 <어르신 사업용 백신 조달 업체>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공급일정 수립 ○ 납품기한 내 백신 공급 완료 및 질병관리청에 공급 결과 보고 ○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공급 완료된 물품의 기관 간 운송 협조 ○ 보건소에서 백신비용 수급, 위탁기간 종료 후 백신을 공급한 지역내 피접종자 주소지 기준으로 백신비 재정산 ○ 잔여백신 반품 및 비용 환수 <임신부 및 어린이 사업용 백신 조달 업체> ○ 보건소 발주확인 및 백신 공급 ○ 납품기한 내 백신 공급 완료 및 질병관리청에 공급 결과 보고 ○ 보건소에서 백신비용 수급</p> <p>6) 백신 제조·수입사(도·소매업 등 공급사 포함) ○ 국가사업을 위해 조달계약업체의 백신 납품 ○ 백신공급에 대한 정보(시기별 유통 가능량, 수급계획 대비 생산량 변동 등)를 질병관리청에 상시 공유 협조</p>	<p>5) 백신 조달계약 업체 ○ 조달계약 체결 후 「물품구매 및 유통(수송) 특수조건」에 의거, “유통(수송) 사업계획서*”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 콜드체인 상시유지 세부 이행계획, 물류창고 위치 및 규모, 수송자 등 교육계획 등 ○ 접종기관(보건소·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일정 수립 ○ 사업대상별 납품기한 내 백신 공급 완료 및 질병관리청에 중간 및 최종 공급 결과 보고 ○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공급 완료된 물품의 기관 간 운송(재분배*) 업무 수행 * 재분배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종료 후 잔여백신 반품 및 비용 환급</p> <p>6) 백신 제조·수입사(도·소매업 등 공급사 포함) ○ 백신공급에 대한 정보(시기별 유통 가능량, 수급계획 대비 생산량 변동 등)를 질병관리청에 상시 공유 협조 ○ 과거 백신 공급 실적 등 참고하여 의료기관별·지역별 백신 균등 공급</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p>	<p>1) 1일 접종 인원수 제한 ○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1일 예진 의사 1인당 최대 접종 가능 인원수 100명 제한 * 단, 예외 인정 접종의 경우 최대 접종 가능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음</p>	<p>1) 1일 접종 인원수 제한 ○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1일 예진 의사 1인당 최대 접종 가능 인원수 100명 제한 * 단, 예외 인정 접종의 경우 최대 접종 가능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2022-2023절기 사업 시행 중 3회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로 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가능</p>	15
	<p><추가></p>	<p>4) 오접종 예방 ○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접수단계, 예진단계, 접종단계)로 접종 대상자 및 접종백신 종류 확인 (예: 코로나,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구분) 하도록 홍보 및 교육 실시 - 인플루엔자 대신 다른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 호명하여 어르신들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름, 생년월일 등 2가지 이상의 정보로 철저히 확인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접종자와는 다른 고유색(녹색)의 스티커, 목걸이 등으로 접종대상자를 구분하도록 추진 - 인플루엔자 고유색(녹색) 지정 → 코로나 백신과 구분 되도록 접종대상자·보관·부대물품(냉장고 등) 구분하여 표시(스티커·목걸이 등, 의료기관별 자체 조치) ○ 오접종 발생 시 보고체계 - 오접종 발생 시 접종의료기관은 오접종 발생 즉시 오접종 사실에 대하여 보건소로 우선보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오류 발생 보고서(별첨 14)를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 시·도는 질병관리청에 공문발송</p>	16-17

		<p>* 보고체계 :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p> <p>-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우선보고</p> <p>*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 알게 된 경우 위탁해지 가능</p> <p>- (보건소) 오류 발생 보고서 작성 후 시도에 보고</p> <p>* 접종 당일에 보고해야 하며, 접종 7일 후 후속조치·이상반응 결과 보고</p> <p>- (시·도) 보건소에서 작성한 오류 발생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에 공문 발송</p> <p>○ 오접종 이상반응 관리 및 후속조치</p> <p>- 보건소는 접종 7일 후 대상자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확인 후 신고</p> <p>* 단,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 신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p> <p>- 보건소는 오접종 발생기관 대상 후속·보완조치(현장 점검, 재교육, 주의 등) 실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21-'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오접종 예방을 위해 안내한 '접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일부 내용 수록</p> </div> <p>5) 감염관리</p> <p>○ 예방접종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 손위생 실시</p> <p>○ 근육주사 시 장갑을 착용한 경우, 장갑은 환자마다 바꿔 착용하며, 장갑 교체시 마다 손위생 실시</p> <p>○ 주사제의 준비와 투여과정 등 모든 과정에 반드시 손위생과, 무균술을 준수</p> <p>○ 주사제의 준비, 주입하는 장소는 청결 유지</p> <p>○ 한 번 사용한 주사기(Syringe) 및 주사바늘(Needle) 등은 재사용 금지</p> <p>* 인플루엔자 백신은 모두 프리필드실린지로 제공됨</p> <p>○ 대기공간→접종공간→접종 후 공간으로 구분·운영</p> <p>- 대기·접종 후 관찰 공간은 가급적 대상자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p>- 별도 공간이 없을 경우 대기공간과 겸용 가능하나 대기자와 접종 완료자가 구분되어야 함(의자 색 구분 등)</p> <p>○ 투여 전 예진표에 적혀 있는 백신의 종류와 대상자 이름 및 생년월일을 한 번 더 대상자에 질문하여 확인</p> <p>○ 주사기의 피스톤과 주사바늘의 연결부위, 주사바늘의 삽입부위가 손이나 기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폐기</p> <p>○ 투여 전 적절한 소독제(알코올 솜 등)를 사용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자연건조를 통하여 완전히 건조 시킨 후 접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21-'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침 (부록)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기관 주의 사항' 내용 중 감염관리 부분 수록</p> </div>	
--	--	---	--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3)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 보상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에서 발생한 질병, 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 신청 가능
 ○ 보상신청 기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보상신청 가능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기한 내에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보상신청관련 서류 제출
 ○ 보상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이의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 의무기록사본은 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기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4) 이상반응 능동감시
 ○ (목적) 신규 접종집단에 대한 이상반응(경미한 이상반응 포함) 동향 파악
 ○ (방법)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자동 발송 → 이상반응 발생 시 피접종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
 * 대상자 중 예방접종 예진표 내 이상반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각 이상반응별 대처법 안내
 * [부록 10] 이상반응 전산관리 3. 이상반응 능동감시 참고
 - 신고된 내역 중 의사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이상반응은 보건소 신고가 필요한 보호자 신고에서 확인 가능
 ※ 보건소에서 내역확인 후 병의원/보건소신고로 전환 필요
 ○ (대상)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능동감시 실시 예정
 ○ 질병관리청은 신고된 이상반응의 빈도·동향 등 분석하여 이상반응 감시

- 3)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4호)에 명시된 백신을 접종받은 대상자
 ※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에서 발생한 질병, 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 신청 가능
 ○ 보상신청 가능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내에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관련 서류 제출
 ○ 보상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사망 및 장애인)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이의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의무기록 사본은 초진 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 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방문한 의료기관별로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4) 이상반응 능동감시
 ○ (목적) 신규 접종집단에 대한 이상반응(경미한 이상반응 포함) 동향 파악
 ○ (방법)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자동 발송 →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받은 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이상반응 신고
 * 대상자 중 예방접종 예진표 내 이상반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안내 방법
 * [부록 9] 이상반응 전산관리 3. 이상반응 능동감시 참고
 - 신고된 내역 중 의사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이상반응은 보건소 신고/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호자 신고에서 확인 가능
 ※ 보건소에서 신고된 내역 확인 후 병의원/보건소 신고로 전환 필요
 - 신고된 내역 중 삭제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공문 제출
 ○ (대상)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능동감시 실시 중
 ○ 질병관리청은 신고된 이상반응의 빈도·동향 등 파악하여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18-19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p>	<p>1) 역학조사 및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예방접종 후 피접종자에서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 집단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 임신부의 유산, 사산 또는 출생아의 사망 등 산과적 합병증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이상반응 담당자는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에 대한 인터넷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 * [부록 10] 이상반응 전산관리의 신고 매뉴얼 참고 - 시·도 역학조사반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실시 및 분석 <별첨서식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백신과 피해발생 경과 등 피해사례에 대한 확인 • 질병 과거력, 이상반응 가족력 등 인적 특성 조사 • 이상반응 발생 후 임상검사 자료 및 임상 경과자료 수집 • 백신 보관상태, 접종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 조사 •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유무 확인 • 주치의, 예방접종 관련자 등 면담 • 과거 유사사례 여부에 대한 문헌 고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관련성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p>1) 역학조사 및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예방접종 후 접종 받은 자에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이상반응: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을 말하며,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나.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라.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마. 영구적 장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 바. 아나필락시스, 심각한 신경계 증상, 건강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이에 준한다고 인정된 경우 * 임신부의 유산, 사산 또는 출생아의 사망 등 산과적 합병증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이상반응 담당자는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인터넷(웹)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중증이상반응신고관리 * [부록 9] 이상반응 전산관리의 신고 매뉴얼 참고 - 시·도 역학조사반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실시[별첨서식 11]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백신과 피해발생 경과 등 피해사례에 대한 확인 • 질병 과거력, 가족력 등 인적 특성 조사 • 이상반응 발생 후 임상 양상 및 검사 자료 및 관련 의무기록 수집 • 백신 보관상태, 접종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 조사 •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유무 확인 • 주치의, 예방접종 관련자 등 면담 • 과거 유사사례 여부에 대한 문헌 고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p>20-21</p>
--	---	--	--------------

	<p>〈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 〉</p>	<p>〈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 〉</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조치 사항</th> <th style="width:50%;">담당</th>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발생 인지</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개요 파악</td> <td>보건소 담당자</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발생 유선 및 인터넷 보고 - 인터넷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td> <td>보건소 담당자</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역학조사 및 인터넷 보고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피접종자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td> <td>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td> </tr> <tr> <td>↓</td> <td></td> </tr> <tr> <td>피해조사반 회의(플컨퍼런스) 개최 (필요시)</td> <td>예방접종피해조사반</td> </tr> <tr> <td>↓</td> <td></td> </tr> <tr> <td>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td> <td>예방접종피해조사반</td> </tr> </table> <p>※ 사인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간에 관계없이 피접종자의 사망에 대한 전화연락 및 보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4, 8376, 8377)에 보고</p> <p>2) 피해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 건 ● 시·도 역학조사반은 보상신청 사례에 대한 기초 피해조사 실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피해조사 결과 검토 및 필요시 정밀피해조사 실시 <p>*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p>	조치 사항	담당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발생 인지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개요 파악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발생 유선 및 인터넷 보고 - 인터넷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역학조사 및 인터넷 보고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피접종자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	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	↓		피해조사반 회의(플컨퍼런스) 개최 (필요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조치 사항</th> <th style="width:50%;">담당</th>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 발생 인지</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개요 파악</td> <td>보건소 담당자</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유선 및 인터넷(웹) 보고 - 인터넷(웹)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td> <td>보건소 담당자</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인터넷(웹) 보고 - 예방접종 시행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내원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td> <td>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플컨퍼런스) 개최 (필요시)</td> <td>예방접종피해조사반</td> </tr> <tr> <td>↓</td> <td></td> </tr> <tr> <td>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td> <td>예방접종피해조사반</td> </tr> </table> <p>※ 사인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간에 관계없이 접종 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전화 연락 및 보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4, 8377)에 보고</p> <p>2) 피해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 건 ● 시·도 역학조사반은 보상신청 사례에 대한 기초 피해조사 실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해당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검토 <p>*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p>	조치 사항	담당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 발생 인지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개요 파악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유선 및 인터넷(웹) 보고 - 인터넷(웹)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인터넷(웹) 보고 - 예방접종 시행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내원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	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플컨퍼런스) 개최 (필요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조치 사항	담당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발생 인지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개요 파악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발생 유선 및 인터넷 보고 - 인터넷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사망) 역학조사 및 인터넷 보고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피접종자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	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																																																		
↓																																																			
피해조사반 회의(플컨퍼런스) 개최 (필요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조치 사항	담당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 발생 인지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개요 파악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유선 및 인터넷(웹) 보고 - 인터넷(웹)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인터넷(웹) 보고 - 예방접종 시행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내원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	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플컨퍼런스) 개최 (필요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p>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5. 2022-2023절기 사업 개요</p>	<p>(변경)</p>	<p>사업 목표, 사업 대상, 사업 기간, 권장 백신주 등 2022-2023절기 사업 계획에 맞게 수정</p>	<p>24-26</p>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어르신 대상 2. 임신부 대상 3. 어린이 대상</p>	<p>1-2 백신 공급 및 관리 2-2 백신 공급 및 관리 3-2 백신 공급 및 관리 (삭제)</p>	<p>백신공급방식 변경으로 III.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 방식 작성 4-1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 4-2 민간개별구매 방식</p>	<p>77-84</p>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 어르신 대상 1-1 사업 개요</p> <p>2. 임신부 대상 2-1 사업 개요</p> <p>3. 어린이 대상 3-1 사업 개요</p>	<p>나. 사업 대상</p> <p>*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도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p>	<p>나. 사업 대상</p> <p>*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 접종 가능</p>	<p>29,47,61</p>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 어르신 대상 1-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2. 임신부 대상 2-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3. 어린이 대상 3-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관리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탁계약 체결 2.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 확인 3. 접종 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접종 방지 4.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및 예진 후 예방접종 실시 5.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접종 가능 6. 당일 시행한 접종기록은 접종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당일 입력 7. 사업대상별 백신공급방식에 따라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사업용 백신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며, 임신부 및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사업용 백신은 민간개별구매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15~30분 대기하도록 안내 	<p>관리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탁계약 체결 2.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 확인 3. 접종 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접종 방지 4.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및 예진 후 예방접종 실시 5.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접종 가능 6. 당일 시행한 접종기록은 접종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당일 입력 7. 백신공급방식에 따라 사업대상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 대상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사업대상별 구분없이 접종가능하나,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민간개별구매'방식으로 구매한 백신(어린이·임신부사업용)과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으로 공급받은 백신(어르신 사업용) 구분 접종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20~30분 대기하도록 안내 	<p>32,49,64</p>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 어르신 대상 1-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2. 임신부 대상 2-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3. 어린이 대상 3-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p> <p>- 과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최근 2년 이내 운영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증을 인정함</p> <p>* 교육이수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신규(기본교육)로 이수하도록 안내</p>	<p>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p> <p>- 과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최근 2년 이내 운영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증을 인정함</p> <p>* 교육 이수 후 사업 미참여 기간이 2년 초과한 경우, 기본교육으로 이수하도록 안내</p>	<p>32,49,64</p>

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어르신 대상
1-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2. 임신부 대상
2-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공통 필수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2 백신의 보관과 취급 3 성인 심폐소생술		
	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로서, 이전 교육 이수 시간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매2년 보수교육 수강 대상자)	4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5 예방접종 방법 6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7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8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9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 10 특수상황에서의 예방접종 및 FAQ		
	기본 교육	1)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2021-2022절기 어르신,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 주의사항 3 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	
		2)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추가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의사	4 성인예방접종 5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접종 등록시스템 사용방법(기본교육-신규계약)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신규-의료기관용)	
		보수 교육	1) 2021년 위탁계약 갱신 대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2021-2022절기 어르신,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 주의사항
			2) 기존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전 교육 이수 기간이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의사	3 성인예방접종 4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접종 등록시스템 사용방법(보수교육-계약갱신) 5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

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어르신 대상
1-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

- 2) 위탁계약 체결
- 계약 전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사업내용 안내
 -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추진, 사업지침, 위탁계약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설명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충분히 안내
 - 어르신 지원 사업
 - (신규 및 재계약(갱신)) 체결기간 2022.7.4(월)~8.5(금) 약 1개월간
 - (추가계약) 기간 제한은 없으나, 사업 시작 이전까지 계약 완료, 사업 시작 이후에는 지역 내 미접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결정
 - 대상: 위탁계약 기간 이후 의료기관 이전, 변경, 재개원, 신규 개원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
 - 방식: 신속한 계약업무를 위해 전자계약으로만 체결 가능
 - 백신 배정 방법: 추가 계약하는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

* 신청 및 학습기간: 2022. 7. 1. ~ 2023. 4. 30.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공통 필수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백신 보관 및 관리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 4 특수상황에서의 예방접종 및 FAQ 5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6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7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8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9 성인 심폐소생술		
	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로서, 이전 교육 이수 시간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매2년 보수교육 수강 대상자)			
	기본 교육	1)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2022-2023절기 어르신,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 3 성인예방접종	
		2)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추가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의사	4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접종 등록시스템 사용방법(기본교육-신규계약) 5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신규-의료기관용)	
		보수 교육	1) 2022년 위탁계약 갱신 대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2022-2023절기 어르신,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성인예방접종
			2) 기존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전 교육 이수 기간이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의사	3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접종 등록시스템 사용방법(보수교육-계약갱신) 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

- 2) 위탁계약 체결
- 계약 전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사업내용 안내
 -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추진, 사업지침, 위탁계약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설명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충분히 안내
 - 어르신 예외인정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 재계약 시 신중히 검토 후 계약 체결
 - 어르신 지원 사업
 - (신규 및 재계약(갱신)) 체결기간 2022.7.4(월)~8.5(금) 약 1개월간
 - (추가계약) 기간 제한은 없으나, 사업 시작 이전까지 계약 완료, 사업 시작 이후에는 지역 내 미접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결정
 - 대상: 위탁계약 기간 이후 의료기관 이전, 변경, 재개원, 신규 개원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

33,50

34

	<p>통한 예상 수요 제출이 불가하며, 보건소에서 백신 배정량을 결정하여 보건소 사업량(보건소로 공급된 위탁의료기관 여유물량 포함)의 재분배를 통해 공급 * 필요시 질병관리청 및 시·도에 백신 추가공급 요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식: 신속한 계약업무를 위해 전자계약으로만 체결 가능 • 백신 배정 방법: 추가 계약하는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예상 수요 제출이 불가하며, 보건소에서 백신 배정량을 결정하여 보건소 보유분(보건소 사업용 또는 위탁의료기관 재분배용 백신)을 통해 공급 <p>* 필요시 질병관리청 및 시·도에 백신 추가공급 요청 가능</p>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어르신 대상 1-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5) 계약기간 ○ 계약 기간: 5년 -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여 재계약(갱신) 가능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계약신청관리 * (보건소)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계약관리 > 계약승인관리</p>	<p>5) 계약기간 ○ 계약 기간: 5년 -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여 재계약(갱신) 가능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 (보건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승인관리</p>	<p>36, 53, 68</p>																
<p>2. 임신부 대상 2-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7)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참여 철회) ○ 의료기관의 이전,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해 연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연도 계약체결 기간 내 재계약 가능</p>	<p>7)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참여 철회) ○ 정당한 사유(의료기관의 이전, 폐업 등)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불가 *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연도 계약체결 기간 내 재계약 가능 ※ 예) 2022.12.20. 위탁계약 해지 했을 경우, 2023.12.20.이후 계약 가능</p>	<p>37, 54, 69</p>																
<p>3. 어린이 대상 3-2 위탁의료기관 역할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table border="1" data-bbox="660 821 1276 1045"> <tr> <th colspan="2">○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th> </tr> <tr> <th>누적 위반 사례 횟수</th> <th>조치사항</th> </tr> <tr> <td>1회</td> <td>- 위탁 계약 해지 및 2021-2022절기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td> </tr> <tr> <td>2회 이상</td> <td>- 위탁 계약 해지 및 3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td> </tr> </table> <p>* 이전 절기와 합산하여 누적 위반 사례로 적발 가능</p> <p>○ 주요 위반 사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전 접종 후 접종일을 사업기간 중으로 등록 ⇒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계약 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가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 내역 허위 등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 총액계약-사전현물공급 백신과 민간개별구매 백신의 혼용 -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초과 접종 3회(3일) 적발 	○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		누적 위반 사례 횟수	조치사항	1회	- 위탁 계약 해지 및 2021-2022절기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2회 이상	- 위탁 계약 해지 및 3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table border="1" data-bbox="1310 782 1937 997"> <tr> <th colspan="2">○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th> </tr> <tr> <th>누적 위반 사례 횟수</th> <th>조치사항</th> </tr> <tr> <td>1회</td> <td>- 위탁 계약 해지 및 해지일로부터 1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td> </tr> <tr> <td>2회 이상</td> <td>- 위탁 계약 해지 및 3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td> </tr> </table> <p>* 이전 절기와 합산하여 누적 위반 사례로 적발 가능</p> <p>○ 주요 위반 사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전 접종 후 접종일을 사업기간 중으로 등록 ⇒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계약 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가 -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 내역 허위 등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 총액계약-사전현물공급 백신과 민간개별구매 백신의 혼용 -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초과 접종 3회(3일) 적발 - 무료접종 시행 후,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청구한 경우 - 백신냉장고에 음식을 보관 및 적정온도(2~8℃) 유지 이탈 등 -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 알게 된 경우 위탁해지 가능 	○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		누적 위반 사례 횟수	조치사항	1회	- 위탁 계약 해지 및 해지일로부터 1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2회 이상	- 위탁 계약 해지 및 3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p>38, 55, 70</p>
○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																			
누적 위반 사례 횟수	조치사항																		
1회	- 위탁 계약 해지 및 2021-2022절기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2회 이상	- 위탁 계약 해지 및 3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																			
누적 위반 사례 횟수	조치사항																		
1회	- 위탁 계약 해지 및 해지일로부터 1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2회 이상	- 위탁 계약 해지 및 3년간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 어르신 대상</p> <p>1-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다.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급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비용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급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행안부 주민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비용 지급 	40
	<p>1) 예방접종 비용상환</p> <p>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69세 어르신이 10.12~10.20 만 70세~74세 어르신이 10.12~10.17에 내원한 경우,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접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은 <부록 1> 어르신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확인 * 대상자는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단순 혈당검사 및 혈압검사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진료내역 확인 실시, 위탁사업 종료 후 어르신 사업용 잔여 백신 반환 등 의료기관 관리 조치 및 예산처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2021~2022결기는 2021. 2. 28.(월)까지 진료비 청구 완료된 건에 한해 확인가능 	<p>1) 예방접종 비용상환</p> <p>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69세 어르신이 10.12~10.19 만 70세~74세 어르신이 10.12~10.16에 내원한 경우,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접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은 <부록 1> 어르신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확인 * 대상자는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단순 혈당검사 및 혈압검사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내역 확인 시 위탁의료기관에서 청구 완료된 건에 대해 시행비 지급(진료내역 확인등에 기간소요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41
	<p>마) 예방접종비용 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연도 지급액에서 비용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지급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가능 어르신 지원사업의 경우, 백신은 사전현물공급 방식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접종에 대해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대체하여 접종 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백신에 대해 보건소에서 시행비 차감 및 비용으로 환수 	<p>마) 예방접종 비용 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한 백신의 적합하지 않은 접종에 대해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대체하여 접종 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비용 환수 가능 	42

	<p>2) 예방접종 비용상환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 어르신 지원사업의 경우 시행비 상환 불가, 사용한 백신은 의료기관 자체 백신으로 대체하여 보건소에 반납 *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시행비 차감 및 비용 환수 조치할 수 있음 	<p>2) 예방접종 비용상환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작 전(22.10.12. 이전) 접종 등 사업 기간(22.10.12. ~22.12.31.)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 시행비 상환 불가, 사용한 백신은 의료기관 자체 백신으로 대체하여 보건소에 반납 *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비용 환수 가능 	42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 어르신 대상</p> <p>1-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라.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p>	<p>1)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중 촉탁의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p>1)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중 촉탁의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공가를 활용하여 일반거점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45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2. 임신부 대상</p> <p>2-1 사업 개요</p> <p>나. 사업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를 제시한 임신부(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2020년 0세 인구 적용(약 27만) 후 목표접종을 반영 약 13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자(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는 보건소에서만 국가 지원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임신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 별도 보관하지 않으나, 접종당시 임신주수 및 출산예정일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대상자 조회 후 인플루엔자 접종 등록 시 의학적 조건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를 제시한 임신부(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2021년 0세 인구 적용(약 25만) 후 목표접종률(55%) 반영 약 14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자(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접종 가능 * 임신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 별도 보관하지 않으나, 접종당시 임신주수 및 출산예정일을 인플루엔자 접종 등록 시 입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기관: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접종등록 > 접종대상자 여부 민간개별구매 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47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2. 임신부 대상</p> <p>2-1 사업 개요</p> <p>라. 기관별 역할</p>	<p>1) 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사회에서 사업 안내 및 안전접종을 위한 연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 지역의사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강사, 강의자료 지원 등 협조 ○ 백신 관리 철저(부록4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참고) ○ 지역 내 백신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구매가 어려울 경우 보건소가 보유한 임신부 지원사업용 또는 시·도 본부 추가 	<p>1) 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사회에서 사업 안내 및 안전접종을 위한 연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 지역의사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강사, 강의자료 지원 등 협조 ○ 백신 관리 철저(부록4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지역 내 백신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위탁의료기관 백신 재분배·추가공급 등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어린이·임신부 지원사업용 	48

	<p>공급용 백신을 공급받아 위탁의료기관 공급가능, 백신 사전현물공급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시행비만 지급</p> <p>* 반드시 재분배 전산등록 완료 후 백신 현물 재분배(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 공급 불가)</p>	<p>백신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사전현물공급 백신으로 재분배(추가공급) 가능하며, 사전현물공급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시행비만 지급(보건소에서 재분배 전산등록)</p> <p>※ 보건소 재분배 전산등록 시점 이후 시행비만 지급 되므로 반드시 위탁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백신 소진 완료 확인 후 재분배 실시(재분배 등록 시 의료기관 보유물량으로 접종한 경우라도 시행비만 지급처리 됨)</p>	
	<p>2) 위탁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 임신부 지원사업용 백신 구매 등)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대상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백신 관리 철저(부록4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참고) ○ 임신부 지원사업용 백신의 적절한 수량 구매(지난절기 임신부 접종률을 참고하여 과다한 구매를 지양)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관할 시도, 보건소와 지역사회 예방접종을 향상 등 업무협조체계 유지 	<p>2) 위탁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 등)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임신부 지원사업용 백신 개별 구매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대상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백신 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등 적극 협조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어린이·임신부 사업용 백신의 적절한 수량 구매(과거 사업 대상 접종현황을 참고하여 과다한 구매를 지양) ○ 백신 관리 철저(부록4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 라인” 참고)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관할 시도, 보건소와 지역사회 예방접종을 향상 등 업무협조체계 유지 	48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2. 임신부 대상</p> <p>2-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2) 위탁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지원사업 - 위탁계약 체결 기간: 연중 기간 제한 없이 계약 가능 - ‘성인 인플루엔자’ 탭에서 ‘성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제출하여 참여 가능 	<p>2) 위탁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지원사업 - 위탁계약 체결 기간: 연중 기간 제한 없이 계약 가능 - 단, 총량구매-사전현물방식 위탁의료기관은 사업 시작 이후에는 지역 내 미접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결정 • 백신 배정 방법: 사업 시작 이후 계약한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예상 수요 제출이 불가하며, 보건소에서 백신 배정량을 결정하여 보건소 보유분(보건소 사업용 또는 위탁의료기관 재분배용 백신)을 통해 공급 * 필요시 질병관리청 및 시·도에 백신 추가공급 요청 가능 - ‘성인 인플루엔자’ 탭에서 ‘성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제출하여 참여 가능 	51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2. 임신부 대상</p> <p>2-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나.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p> <p>3. 어린이 대상</p> <p>3-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나.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p>	<p>⑩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같이 위탁한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백신수요량 입력기간까지 관할 보건소에 [별첨서식 7]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⑩ '총량구매-사전현물방식' 위탁의료기관은 백신 수요량 입력 기간까지 관할 보건소에 [별첨서식 7]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p>	<p>57, 72</p>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2. 임신부 대상</p> <p>2-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다.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급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비용 지급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급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행안부 주민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비용 지급 • 현물공급 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사용 위탁의료기관은 어르신 비용상환방식과 동일 </div>	<p>57, 72</p>
<p>3. 어린이 대상</p> <p>3-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다.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p>	<p>1) 예방접종 비용상환</p> <p>아) 예방접종비용 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비용 지급 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중복접종 등)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p>1) 예방접종 비용상환</p> <p>아) 예방접종비용 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비용 지급 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중복접종 등)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한 백신의 적합하지 않은 접종에 대해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대체하여 접종 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비용 환수 가능 	<p>59, 74</p>

	<p>2) 예방접종 비용상환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불가 * 위탁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 어린이 및 임신부 지원사업의 경우 시행비 및 백신비 상환 불가 	<p>2) 예방접종 비용상환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불가 * 위탁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 시행비 상환 불가, 사용한 백신은 의료기관 자체 백신으로 대체하여 보건소에 반납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백신비 및 시행비 상환 불가) *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비용 환수 가능 	60, 74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3. 어린이 대상</p> <p>3-1 사업 개요</p> <p>나. 사업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08.1.1~2021.8.31. 출생자 주민등록 인구통계 553만명 중 목표접종률 반영): 430만 명 *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단,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자(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는 보건소에서만 국가지원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어린이 지원사업 대상은 2022년 2월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로 2021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09.1.1~2022.8.31. 출생자 주민등록 인구통계 548만명 중 목표접종률 반영): 439만 명 *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단,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자(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 *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접종 가능 * 어린이 지원사업 대상은 2023년 2월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로 2022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 * 예방접종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총량구매사전허물공급):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접종관리>인플루엔자접종등록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민간개별구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등록업무 >예방접종등록 	61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3. 어린이 대상</p> <p>3-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II. 사업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3. 어린이 대상</p> <p>3-2 위탁의료기관 역할</p> <p>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 체결</p>	<p>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체결 전 교육이수 - 어린이 대상 신청 및 학습기간 : 2021. 3. 2. ~ 2022. 2. 28. -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 <table border="1" data-bbox="660 1276 1285 1428"> <thead> <tr> <th>구분</th> <th>교육대상</th> <th>교육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공통 필수</td> <td>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td> <td>1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2 백신의 보관과 취급 3 성인 심폐소생술 4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td> </tr> <tr> <td>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의</td> <td>5 예방접종 방법</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공통 필수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2 백신의 보관과 취급 3 성인 심폐소생술 4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의	5 예방접종 방법	<p>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체결 전 교육이수 - 어린이 대상 신청 및 학습기간 : 2022. 3. 2. ~ 2023. 2. 28. -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 <table border="1" data-bbox="1310 1276 1935 1428"> <thead> <tr> <th>구분</th> <th>교육대상</th> <th>교육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공통 필수</td> <td>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td> <td>1 백신 보관 및 관리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td> </tr> <tr> <td>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의</td> <td>4 특수상황에서의 예방접종 및 FAQ 5 예방접종과 이상반응</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공통 필수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백신 보관 및 관리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	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의	4 특수상황에서의 예방접종 및 FAQ 5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65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공통 필수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2 백신의 보관과 취급 3 성인 심폐소생술 4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의	5 예방접종 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공통 필수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백신 보관 및 관리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																
		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의	4 특수상황에서의 예방접종 및 FAQ 5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예방접종 시행의사로서, 이전 교육 이수 시간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매2년 보수교육 수강 대상자)	6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7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8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Ⅰ) 9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Ⅱ) 10 특수상황에서의 예방접종 및 FAQ		예방접종 시행의사로서, 이전 교육 이수 시간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매2년 보수교육 수강 대상자)	6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7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8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9 성인 심폐소생술			
	기본 교육	1)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2) 기존 어르신 및 임신부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추가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2021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BCG접종과 이상반응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4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1) 5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2) 6 HPV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7 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 8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계약신청 방법(신규-의료기관용) 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기본 교육	1)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2) 기존 어르신 및 임신부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추가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1 2022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BCG접종과 이상반응 3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1) 4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2) 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6 HPV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7 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 8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계약신청 방법(의료기관용) 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보수 교육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전 교육 이수 기간이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의사(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포함)	1 2021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4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1) 5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2) 6 HPV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7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계약갱신 방법(보수-의료기관용)	보수 교육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전 교육 이수 기간이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의사(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포함)	1 2022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1) 3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2)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5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계약갱신 방법(의료기관용)			
		추가 교육과정 운영	1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 주의사항						
		2) 위탁계약 체결	○ 연령별 위탁계약 체결방식 · 위탁계약 체결 기간: 연중 기간 제한 없이 계약 가능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체크	2) 위탁계약 체결	○ 연령별 위탁계약 체결방식 - 단, 총량구매-사전현물방식 위탁의료기관은 사업 시작 이후에는 지역 내 미접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결정 · 백신 배정 방법: 사업 시작 이후 계약한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예상 수요 제출이 불가하며, 보건소에서 백신 배정량을 결정하여 보건소 보유분(보건소 사업용 또는 위탁의료기관 재분배용 백신)을 통해 공급 * 필요시 질병관리청 및 시·도에 백신 추가공급 요청 가능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참여 백신 시행 확인증 체크	66			
II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 방식 4 백신 공급 및 관리 4-1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	기본원칙 · 어르신 사업용 백신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 * 총량구매 현물공급된 백신은 임신부 및 어린이(생후6개월~만13세) 사업을 위해 교차사용 불가 · 총량구매-현물공급 백신	기본원칙 ·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 교차사용 -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사업용으로 공급한 정부총량-사전현물공급 백신은 교차사용 가능 - 의원급,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어린이,임신부 사업용으로 민간개별구매한 백신과 정부총량-사전현물공급 백신은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지역 내 미접종자 대비 보유 백신이 과다한 의료기관의 백신을 회수하여 백신이 부족한 기관으로 공급, 종료 후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을 회수 -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적극 협조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백신회수 진행(조달계약업체에 회수 요청할 수 있음) 	<p>교차사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 (보건소) 지역 내 미접종자 대비 보유 백신이 과다한 의료기관의 백신을 회수하여 백신이 부족한 기관으로 공급, 종료 후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을 회수 -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적극 협조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백신회수 진행(조달계약업체에 회수 요청할 수 있음) 	
<p>II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 방식</p> <p>4. 백신 공급 및 관리</p> <p>4-1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p> <p>나. 백신 공급 절차</p>	<p>6) 잔여백신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의료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종료 후 백신 잔여량 보건소 백신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방법(보건소회수, 의료기관 반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지역 의사회 협의체를 통해 논의 ※ 시스템 잔여량과 실제 회수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파손, 오접종, 보관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시행비 차감 및 비용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보건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 백신 회수하여, 질병관리청의 회수 결정 시 회수 예정 백신을 폐기하지 않고 현물로 보관 (백신 현물을 근거로 백신비 정산) ○ 질병관리청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공급량의 3% 범위 내에서 회수를 결정하여 조달계약업체에 백신 회수 요청 및 백신비 정산 요청 ○ 조달계약업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공급량의 3% 범위 내에서 결정한 보건소 회수량에 대하여 직접 회수 실시 후 백신비 환급 조치 	<p>6) 잔여백신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의료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종료 후 백신 잔여량 보건소 백신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방법(보건소회수, 의료기관 반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지역 의사회 협의체를 통해 논의 ※ 시스템 잔여량과 실제 회수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파손, 오접종, 보관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반납 백신의 경우 사업종료 후 조달업체 반품 불가) ※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비용 환수 가능 ○ 보건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 백신 회수하여, 질병관리청의 회수 결정 시 회수 예정 백신을 폐기하지 않고 현물로 보관 (백신 현물을 근거로 백신비 정산) ○ 질병관리청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공급량의 3% 범위 내에서 회수를 결정하여 조달계약업체에 백신 회수 요청 및 백신비 정산 요청 * 시도 및 질병관리청 추가 확보분 백신을 우선 반품 요청 후 반품 가능, 잔여량에 대해 보건소 반품 실시 ○ 조달계약업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공급량의 3% 범위 내에서 결정한 보건소 회수량에 대하여 직접 회수 실시 후 백신비 환급 조치 	<p>80-81</p>
<p>II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 방식</p> <p>4. 백신 공급 및 관리</p> <p>4-1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p> <p>다.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p> <p>4-2 민간개별구매 방식</p>	<p>1) 백신 인수 시 확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자는 반드시 주문한 수량과 인수받는 백신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수증에 서명 -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급 요청 후, 주문한 전체 수량을 인수하고 인수증에 서명 * 수량 확인 없이 인수증에 우선 서명하고 백신을 수령하여 공급 	<p>1) 백신 인수 시 확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자는 반드시 주문한 수량과 인수받는 백신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수증에 서명 -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급 요청 후, 주문한 전체 수량을 인수하고 인수증에 서명 * 수량 확인 없이 인수증에 우선 서명하고 백신을 수령하여 공급 	<p>81, 84</p>

<p>다.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p>	<p>량의 차이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추가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의 상표가 훼손되었거나 백신 파손 또는 불량을 확인한 경우 공급 업체에 교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된 백신의 경우 자체 폐기해서는 안 되며, 공급 업체가 회수 전까지 보관 ○ 백신 인수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 원본을 제출받아 2년간 보관 <p>2) 백신의 보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4]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에 따라 보관 ○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백신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접종 	<p>량의 차이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추가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의 상표가 훼손되었거나 백신 파손 또는 불량을 확인한 경우 공급 업체에 교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된 백신의 경우 자체 폐기해서는 안 되며, 공급 업체가 회수 전까지 보관 ○ 백신 인수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 원본을 제출받아 5년간 보관 <p>2) 백신의 보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4]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참고하여 백신 보관 ○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백신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접종 <p>* 백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보건소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p>																	
<p>II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 방식 4 백신 공급 및 관리 4-2 민간개별구매 방식</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기본원칙</td> </tr> <tr> <td>• 임신부, 생후6개월~만13세 어린이 사업용 백신은 민간개별구매</td> <td></td> </tr> <tr> <td>• 민간개별구매 백신</td> <td></td> </tr> <tr> <td>- (위탁의료기관) 작년 접종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개별구매하고 접종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실시</td> <td></td> </tr> </table>	기본원칙		• 임신부, 생후6개월~만13세 어린이 사업용 백신은 민간개별구매		• 민간개별구매 백신		- (위탁의료기관) 작년 접종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개별구매하고 접종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실시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기본원칙</td> </tr> <tr> <td>•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임신부 민간개별구매 방식</td> <td></td> </tr> <tr> <td>-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사업용으로 공급한 정부총량·사전현물공급 백신과 교차사용 불가</td> <td></td> </tr> <tr> <td>- (위탁의료기관) 작년 접종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개별구매하고 접종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실시</td> <td></td> </tr> </table>	기본원칙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임신부 민간개별구매 방식		-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사업용으로 공급한 정부총량·사전현물공급 백신과 교차사용 불가		- (위탁의료기관) 작년 접종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개별구매하고 접종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실시		<p>83</p>
기본원칙																			
• 임신부, 생후6개월~만13세 어린이 사업용 백신은 민간개별구매																			
• 민간개별구매 백신																			
- (위탁의료기관) 작년 접종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개별구매하고 접종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실시																			
기본원칙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임신부 민간개별구매 방식																			
-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사업용으로 공급한 정부총량·사전현물공급 백신과 교차사용 불가																			
- (위탁의료기관) 작년 접종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개별구매하고 접종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실시																			
<p>별첨서식4.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일본뇌염</td> <td>II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td> <td><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td> </tr> <tr> <td>IIEV(약독화 생백신)</td> <td><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td> </tr> <tr> <td>인플루엔자</td> <td>IIV(0.5ml)</td> <td>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민간개별구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td> </tr> </table>	일본뇌염	II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IIEV(약독화 생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IV(0.5ml)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민간개별구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일본뇌염</td> <td>II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td> <td><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td> </tr> <tr> <td>IIEV(약독화 생백신)</td> <td><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td> </tr> <tr> <td>인플루엔자</td> <td>IIV(0.5ml)</td> <td>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민간개별구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td> </tr> </table>	일본뇌염	II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IIEV(약독화 생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IV(0.5ml)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민간개별구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91</p>
일본뇌염	II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IIEV(약독화 생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IV(0.5ml)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민간개별구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II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IIEV(약독화 생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IV(0.5ml)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민간개별구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별첨서식7.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 기관 자율점검표		양식 현행화	94-99
별첨서식8.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 기관 방문점검표		양식 현행화	100-105
부록1. 어르신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현행화	113-125
부록2. 2022-2023절기 국내 유통 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 종류		현행화	126
부록3. (총량구매-현물공급) 백신 재분배 매뉴얼		현행화	127-129
부록4. 백신 보관관리 및 관리 가이드 라인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2021.12.) 일부 발췌	130-148
부록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예방접종 권한 신청 매뉴얼 (의료기관)		화면 구성 등 현행화	149-152

부록6.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화면 구성 등 현행화	153-172
부록9. 이상반응 전산관리		현행화	182-186
부록10.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현행화	187-196
부록11. 예방접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추가>	197-201
부록1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FAQ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반사항 2-12.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접종 4. 기관인증서 등록 관련 4-2. 의료기관인증서 등록 9. 백신 수급 관련 - 백신 공급방식 변경으로 내용 수정	202-218